

[별표 10] <개정 1998.12.31>

군인의위험근무수당지급대상및지급기준

등 별	지급 대상	지급 기준액
갑 종	가. 3월에 1회이상 1,500미터이상 고공에서 항공기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한 자 및 특수전문교육을 받고 낙하산강하조장으로 임용된 자로서 항공기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한 자 나. 월 1회이상 수중에서 파괴작업 또는 잠수작업을 한 자 다. 불발탄 제거처리를 주임무로 하는 자 라. 대테러 특수전술업무를 주임무로 하는 자	월봉급액의 70% 이하(하사이하는 장기하사의 최저호봉의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)
을 종	가. 3월에 1회이상 항공기 및 훈련기구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한 자와 항공기를 이용하여 헬기레펠·패스트로프로 훈련한 자 나. 월 1회이상 특수장비를 이용하여 수중 또는 수상을 통한 벽암 지상륙임무를 수행한 자 다. 삭제 <1998.12.31>	월봉급액의 50% 이하(하사이하는 장기하사의 최저호봉의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)
병 종	가. 3,300볼트이상의 특수전류분야에 종사하는 자 나. 탄약개수의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자 다. 갑종 또는 을종에 해당되었던 자로서 기상변화, 항공기 또는 훈련기구의 부족으로 인하여 항공기 또는 훈련기구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하는 대신 월1회이상 모형탑에서 낙하하는 자	월봉급액의 30% 이하(하사이하는 장기하사의 최저호봉의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)